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성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br>번호 | 2551 |
|----------|------|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8월 09일

발 의 자: 이광성, 권영희, 김기대,  
김기덕,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아량,  
양민규, 유 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호, 이성배,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전석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32명)

## 1. 제안이유

- 현행 급수공사비의 계산방법은 급수관 인입구경 크기와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건물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확대 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 기준에 따라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건물증축 시에도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액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증축면적’이 아닌 해당 ‘구경’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가. 건물증축에 따른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는 해당 구경에 따라 산정함(안 제7조제3항)

##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증축 후 연면적에서 이미 정액공사비를 납부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를 “구경확대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구경에 대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 ~ ②<br/>(생   략)</p> <p>③ 건물 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br/><u>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br/>적(증축 후 연면적에서 이미 정액<br/>공사비를 납부한 면적을 제외한<br/>면적)으로 정액공사비를 부과<br/>다.</u></p> | <p>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 ~ ②<br/>(현행과 같음)</p> <p>③ -----<br/><u>구경확대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br/>해당 구경에 대한 -----<br/>-----.</u></p> |